

##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 - 534호

“2026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(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)”을 시행하기 위하여 「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)」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5. 22.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
### 2026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(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) 공고

#### 1 지원 개요

##### □ 지원 개요

-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대규모 자금 조달의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 보증제도 운영으로 해상풍력 투자 활성화 도모

##### □ 지원 기관

- 신용보증기금(이하 “보증사업기관”)
  -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청기업의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사업기관에 추천(대상사업 확인서 발급)

##### □ 지원 대상 :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의 시설자금 PF대출 금액

- 「전기사업법」 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자
- 보증지원 대상금액의 범위는 해상풍력 발전설비 조성에 필요한 PF대출금액의 60%이내(시설자금을 한함)

※ 단, 보증지원 대출금액은 선순위 대출분에 한하며 시설자금은 발전 및 송전 설비 건설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공사비, 보상비, 부대비, 운영설비비, 각종 세금과 공과금으로 구성됨. 다만, 건설이자를 포함한 금융부대비용과 명백히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함

□ 보증지원 규모 : 총 5,000억원

□ 보증비율 : 보증지원 대상금액의 100% 이내

○ 최고 보증지원 한도 : 4,000억원/건

□ 보증료

○ (기준요율)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

최저 보증료율	최고 보증료율
연 0.3%	연 1.6%

○ (수납시기) 보증서 발급 시 수납

※ 보증기한 1년 초과시 1년 단위 또는 3개월 단위 분할수납 가능

□ 선정기준

○ (대상사업) 신청 프로젝트의 해상풍력 보급효과, 사업 준비성 등 지원대상 적정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 확인서 발급

- 추천등급은 한국에너지공단의 내규에 따르며, 평가 점수에 따른 등급 산출

○ (보증심사) 대상사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증을 신청한 기업의 신용도, 사업성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을 평가

- 평가등급은 보증사업기관의 내규에 따르며, 신용조사 등을 거쳐 등급 산출

□ 지원 제한

○ 보증사업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

구 분	대 상
보증금지	▶ 보증사업기관의 채무를 부당하게 면탈하여 보증사업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등
보증제한	▶ 휴업중인 기업, 대출금 연체기업 ▶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, 허위자료 제출기업 ▶ 보증사업기관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업 등

## 2 지원절차

□ 신청방법 : 이메일 접수 (yink@energy.or.kr)

□ 신청기간 : '26. 5. 28.(목) ~ 상시 \* 예산 소진 시 종료

□ 지원절차



※ 대상사업 확인서는 신청일(서류 보완기간 제외) 부터 30일 이내에 발급 (단, 불가피한 경우 연장될 수 있음)

### < 단계별 진행 세부 내용 >

구 분	단계별	주요내용
한국에너지 공단(센터)	보증사업 신청/접수	보증사업 신청/접수 및 대상기업 확인, 보증사업기관에 추천
보증사업 기관	보증 상담	고객과의 상담을 통하여 해상풍력 프로젝트 사업내용, 보증금지·제한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 결정 및 서류 제출 안내
	현장조사	사업자·대주단이 제출한 자료 등에 대해 예비검토 후 현장조사 실시
	심사/승인	사업전망, 신용도, 원리금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	보증서발급	보증약정 후 금융기관(채권기관)에 보증서 발송
은행 등 금융기관	대출약정/ 실행	보증사업기관으로부터 보증서 수신 후 대출 약정/실행 취급

### 3 유의사항

- 보증사업기관에 손실을 끼친 기업과 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보증취급이 금지 또는 제한
- 보증서 발급은 보증사업기관이 사업성 및 신용도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대상사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보증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
- 보증심사 시 보증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보증사업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름
- 발급된 대상사업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함
- 대상사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보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,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증사업 신청이 제한됨
  - ※ 단, 보증사업 신청 제한은 대상사업 확인서가 발급된 사업에 한하며,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보증사업 예산 잔액이 해당 사업의 보증 신청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청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

### 4 기타사항

-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“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)”과 “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(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)”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  - 보증업무는 보증사업기관의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- 상세내용 문의
  - (대상확인) 한국에너지공단 해상풍력사업처 (052-920-0744)
  - (보증심사) 신용보증기금 혁신금융부 (053-430-6858)

## 5 제출서류

### □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대상사업 평가(한국에너지공단 제출)

서류 목록	비 고
대상사업 확인 신청서 [별첨1]	필수
사업내역서 [별첨2]	
발전사업 허가증 (임시허가증 불인정)	
사업자등록증	
중소(중견기업) 확인서	해당 시
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개발 과제 확인서	

\* 필수서류(신청서, 사업내역서, 발전사업허가증, 사업자등록증 등) 누락시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, [별첨2] 사업내역서에서 요청하는 증빙서류는 평가에 적용

### □ 보증 심사(신용보증기금 제출)

구 분	서류 목록	비 고
정보제공동의서 <sup>주1)</sup>	고객정보 활용동의서	필수
기업개요 <sup>주2)</sup>	기업개요표 또는 사업계획서	

주1) 금융정보, 세무회계정보 등 보증사업기관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보증신청 기업의 동의를 받아 보증사업기관에서 수집하여 검토함

주2) 보증사업기관 소정 양식

주3) 보증신청시 보증조사 필요자료(상세) 추후 안내 예정